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 표준설명서

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 표준설명서는 「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KOFR 사용기관이 일반투자자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말합니다)와 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와 관련된 금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일반투자자에게 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중요내용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참고자료이며, 그 작성, 설명 및고지 등과 관련한 책임·의무는 해당 KOFR 사용기관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본 설명서는 「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'금융거래지표법'), 동법 시행령, 「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」(이하 '감독규정') 및 「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 산출업무규정」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I. 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의 내용 및 용도

1. 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의 정의

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란 **①한국예탁결제원이 ②기관간조건부매매**(「금융투자업규정」 §5-1에 따른 기관간조건부매매를 말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) **거래를 ③기반으로 산출**한 **②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** ('21.9.29일 지정)를 말합니다. **⑤**이 경우 KOFR는 **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**를 의미합니다.

2. 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의 용도

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계약·거래에서 해당 계약·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·교환하고자 하는 금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할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.

※ 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 적용 계약의 범위

예금, 적금, 대출, 금융투자상품 거래, 보험상품, 신용카드 발급, 시설대여, 연불판매, 할부금융, 외국환 거래, 어음 할인·인수, 상호부금, 팩토링, 자금예탁, 종합금융회사·단기금융회사 발행 어음, 종합투자계좌, 어음관리계좌, 어음담보대출, 공제 등

(근거: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 §12① 및 감독규정 §13)

II. 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 기초자료(이하 '기초자료')의 내용 및 선정기준

1. 기초자료의 정의

기초자료란 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 산출에 사용되는 자료로서, 기관간조건부매매 거래 관련 매수가액, 거래기간, 매입증권 등의 자료를 말합니다.

2. 기초자료의 구성요소

기초자료는 ①매수가액, ②환매이율, ③매입일 및 환매일, ④기관간조건부매매 거래의 중권 종류, ⑤기관간조건부매매 거래 관리번호, ⑥기관간조건부매매 거래의 표시통화 명칭, ⑦중권식별번호 및 ③그 밖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사항으로 구성됩니다.

3. 기초자료의 선정기준

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 산출에 사용되는 기초 자료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
III. 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 산출 방법·절차 및 잠재적 한계

1. 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의 산정방법

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의 산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.

- (1) 기초자료(기관간조건부매매 거래) 전체를 **환매이율**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
- (2) 개별 환매이율 중 **극단 금리의 거래를 상·하위 각 5%**씩(매수가액 기준) **제거**
- (3) 매수가액 기준 가중 평균금리 계산

한국무위험지표금리 =
$$\sum_{1}^{N} r \cdot PV_r / \sum_{1}^{N} PV_r$$

(r = 개별 기초자료의 환매이율, N = 개별 기초자료의 수, PVr = 개별 환매이율이 적용된 기초자료의 매수가액)

2. 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의 산출절차

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의 산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(1) 기초자료의 수집·검증 및 확정
- (2) 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의 산정[전산시스템]
- (3) 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의 재산정(OA 프로그램)
- (4) 산정 및 재산정 결과의 상호비교·검증 및 확정

3. 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의 산출의 잠재적 한계

기본적으로 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의 산출은 정확하고 정밀한 절차·방법에 의해 수행되나 다음과 같은 잠재적 한계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

- (1) **산정 방법에 내재된 가정**이 실제 자금조달비용의 가정과 다를 수 있는 점
- (2) 기초자료 중 이상거래(매수가액, 환매이율 등이 과도 하게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거래)의 수가 급증하여 통계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점

IV. 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 산출과정 오류 등의 처리

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 산출기관인 한국예탁 결제원은 산출과정에서 발생한 오류, 왜곡 또는 조작 등이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합니다.

- (1) 기관간조건부매매 거래일 것
- (2) 기관간조건부매매 거래를 통해 취득 또는 이전하는 증권이 **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**일 것
- (3) 해당 거래가 익일물일 것
- (4) 해당 거래에 따른 매수가액이 원화일 것
- (5) 해당 거래의 매도자와 매수자간 **매도증권의 인도 및 매수대금의 지급이 완료**될 것
- (6) **기초자료제출기관이 제출**하는 **기초자료에 의한** 거래일 것
- (2) 해당 오류, 왜곡, 또는 조작 등이 **기초자료제출기관의** 제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
- ●(한국예탁결제원의) 해당 기초자료제출기관에 대한 오류 등 신속한 정정 및 재제출 요구
- ②오류 등의 정정 및 이에 따른 한국무위험지표금리 (KOFR) 재산출
- ❸재산출된 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의 수정 공시 (수정 공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)
- (한국예탁결제원의)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에 오류 등의 발생 사실 및 처리 내역을 보고
- **⑤**(중요 사항의 경우) 금융위원회에 보고

- (1) 해당 오류, 왜곡, 또는 조작 등이 **한국예탁결제원의** 산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
- ●(왜곡, 조작의 경우) 해당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 중지 ❷오류 등의 정정 및 이에 따른 한국무위험지표금리 (KOFR) 재산출
- **❸재산출**된 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의 **수정 공시** (수정 공시 **요건을 충족하는 경우**에 한함)
- (한국예탁결제원의)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에 오류 등의 발생 사실 및 처리 내역을 보고
- **⑤**(중요 사항의 경우) 금융위원회에 보고
- (3) 금융시장에 급격한 시장 교란 발생, 기관간조건부 매매 거래 빈도의 급감, 기초자료 제출을 중단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경우 등으로 인해 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의 타당성·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(4) 산출업무 담당직원 등에 의한 파업이 있는 경우
- 2.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관련 금융 계약에의 영향

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한국무위험지표금리 (KOFR)의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공시하는 대체금리를 산출업무 중단 기간에 한하여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가 사용된 금융 계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V. 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 산출 방법·절차상 중요 변경사항 및 관련 금융 계약에의 영향

1. 중요 변경사항의 범위

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 산출의 방법·절차 관련 사항으로서 변경이 있는 경우 본 설명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(1) 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 산출에 사용되는 **기초** 자료의 요건 및 구성 요소
- (2) 기초자료의 수집·확정의 방법 및 절차
- (3) 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의 **산정 방법 및 산출 절차**
- (4) 국가 비상사태, 불가항력 등 예외상황에서의 산출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
- (5) 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의 공시 주기 및 방법
- (6) 旣공시한 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의 수정 공시 요건 및 수행 절차·방법
- (7) 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 산출 방법·절차의 변경
- (8) 급격한 시장교란 등의 비상사태시 대응 방법·절차

2. 중요 변경사항에 따른 관련 금융 계약에의 영향

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 관련 중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금융 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(1) 중요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한국무위험지표금리 (KOFR)의 변동으로 **해당 금융 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가 변동**할 수 있음
- (2) 수정 공시 **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**에는 공시 이후에 오류, 왜곡, 조작 등이 **발생하여도 수정 공시 되지 않으며**, 이에 따라 관련 금융 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 역시 변동하지 않음
- (3) (1)의 결과로 실제 금액 또는 가치가 변동한 경우 해당 금융 계약의 갱신 또는 일부 조항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
- VI. 국가 비상사태, 불가항력 등의 상황 및 관련 금융 계약에의 영향

1. 대응이 필요한 비상사태의 범위

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의 **산출업무**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비상사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VII. 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 산출업무 중단 시의 비상계획

1. 비상사태로 인한 산출업무 중단 절차

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한국무위험지표금리 (KOFR)의 산출업무를 중단하는 절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(1)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(한국예탁결제원)중요 지표 관리위원회의 1차 심의·의결
- (2) (한국예탁결제원)**인터넷 홈페이지** 등을 통한 **중단 사유·시기** 등의 **공시 및 의견 수렴**
- (3)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및 반영 여부 결정
- (4)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(한국예탁결제원)**중요** 지표 관리위원회의 2차 심의·의결
- (5)(산출업무 중단이 결정된 경우) 해당 사실을 **금융** 위원회에 신고
- (6) 산출업무의 他기관 이관 또는 산출업무의 잠정 수행 등 **금융위원회의 조치 명령 이행**

2. 산출업무 중단 관련 공시 사항

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의 **산출업무 중단을** 검토하는 경우 **공시하는 사항**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(1)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
- (2) 산출업무 중단 기간
- (3) 산출업무 중단 기간 중 사용가능한 대체금리
- (4) 산출업무 중단 기간의 비상연락망
- (5)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의 산출업무 중단 관련 주요 안내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안내사항

3. 산출업무 중단시의 대체금리

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의 **산출업무**가 **중단**되 는 경우 **사용가능한 대체금리는** 다음과 같습니다.

- (1) **한국은행**이 산출·공시하는 **은행·증권금융 차입콜금리**
- (2) ((1)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) 산출업무 **중단 기간** 시작일의 직전 영업일에 공시된 한국무위험지표 금리(KOFR)
- (3) ((1)과 (2)를 모두 적용할 수 없는 경우) 한국예탁결 제원의 **중요지표 관리위원회가 정**하는 금리

- (1) 국가 비상사태, 불가항력적 자연재해, 산출업무
- 전산시스템 장애 등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(2) 산출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테러 또는 산출업무
- KOFR 설명서의 세부 안내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.kofr.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